

排出 賦課金 制度

鄭 國 鉉
〈環境廳 振興協力課長〉

前회에 이어 이번회에도 부과금제도에 관한 주요질의 회신내용을 소개코자 한다.

[문] 공장의 가동율(조업율)에 따라 오염물질의 농도와 유량이 변화하는 공장(시설)인 경우에 환경오염도 검사시 기준초과로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되어 개선계획서 제출을 명한 바, 공장측은 개선계획서에 가동율을 낮추어 유량과 오염물질의 농도를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면서 방지시설을 개선한다고 할 경우, 가동율에 대한 감소되는 농도 및 유량의 변화를 인정하여야 되는지 여부[이 경우는 공장 트러블에 의한 일시에 과도한 부하량 증가 및 기온저하로 방지시설 효율저하(생물학적 처리경우)에 해당됨]

[답] 생산공정과정의 일부가 일시적인 고장등 문제가 있어 배출부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는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이를 수리한 후 가동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의 설계, 시공, 운영은 기온의 저하를 감안하여 악조건 하에서도 법적 배출허용기준치 이하가 되게 하여야 하므로 기후의 영향으로 인한 방지시설 효율저하가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음.

[문] 공동방지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허용기준 초과배출로 인하여 부과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그 부과대상이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일괄 부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개 공장별로 부과를 해야되는지 여부, 공장별 부과시에는 공장별로 원폐수의 특성이 각각 다른데 이때 수질검사를 공장별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환경보전법 제 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 대표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음.

첫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환경보

전법령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 대표자”가 없는 경우로서 각 사업자간에 공동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규약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각 배출업소별로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배출오염물질량, 배출시설가동 시간등 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요인을 상세히 파악한 후 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하고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부과대상업체별로 발급함.

둘째,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개별 배출업소에 납부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도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 대표자를 납부의무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함.

[문] 개선계획서를 제출치 않은 개선명령 이행 보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답] 환경보전법시행령 제 17조의 6의 규정에 의거 개선계획서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다도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6 제 1항 각호의 해당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오염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므로 개선계획서상의 개선기간이 아닌 개선명령기간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12에 의한 개선명령 이행보고는 동법시행규칙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개선명령서상의 개선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한다면 이는 인정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개선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개선계획서에 의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